

KAIST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

2022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목 차

전 문	03
1.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04
2.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6
3.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안	19
4.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4
5. 의결기구운영세칙 일부개정안	26
6. 회의진행규칙 제정안	34
7. 사무처리세칙 일부개정안	38
8.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	40

전 문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현행 「학생회칙」과 여러 세칙 상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칙 및 세칙에 존재하는 여러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되었다. 특임위원회는 회칙 및 세칙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두 달 여간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법령 및 타 학교 총학생회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문들이나 절차들을 개선해 나갔다.

특임위원회는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선거 및 자치기구의 선거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전문기구,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의결기구운영세칙」에 화상원격회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나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하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진행규칙」 역시 신설하였다. 이외에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존재하는 간단한 표기상의 문제나 애매한 부분 들을 수정하였다.

특임위원회에서는 진행한 활동들을 토대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대한 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니, 본 제·개정 제안서가 학생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김찬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이정욱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정인홍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최준열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위원 정인홍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

배경

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에서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전문기구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일부 개정 필요한 조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회칙개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자치기구 선거에 관한 사항
 - 자치기구회장단 선거가 선거의 4대 원칙을 위반하는 등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나 학생회칙 및 자치기구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시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치기구회장단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권자 외의 자가 자치기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경우 자치기구별로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인원수에 따른 불평등이 생길 여지가 있음. 이에 자치기구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의 경우 모든 자치기구가 공정하게 하나의 의결권만 행사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제함.
- 총선거에 관한 사항
 -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없앴.
- 비상대책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매우 빠른 기간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총선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비대위 업무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구에 관한 사항
 - 소통국제화위원회의 번역평가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같이 전학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하도록 함.
 -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중앙집행위원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함.
- 회계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
 - 기층예산심의회의의 구성원을 중앙운영위원(전제학생대표자회의 당연직 대의원)과 동일하게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으로 변경함.
 -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의장이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격려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격려기금 송금 일시 및 격려금 지급 방법을 변경함.
- 기타 맞춤법을 비롯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u>개제</u>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3.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4.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u>개제</u>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3.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4.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p> <p>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p> <p>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지)</p> <p>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p> <p>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p> <p>3. <신설></p> <p>4. <신설></p> <p>5. <신설></p>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p> <p>3. <u>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u></p> <p>4. <u>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u></p> <p>5. <u>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u></p>
<p>제86조(임기)</p> <p>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u>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u>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86조(임기)</p> <p>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u>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u>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105조(회원)</p> <p>1.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p>	<p>제105조(회원)</p> <p>1.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p>

<p>2.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p> <p>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p>4. <u>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u></p> <p>5.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p>2.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p> <p>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p>5. <u>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u>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p> <p>4.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p>제107조(회원)</p>	<p>제107조(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3. <u>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u>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3. <u>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u>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p>제110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2. <u>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u>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p>제110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2. <u>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u>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p>제119조(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u>개제</u>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p>제119조(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u>개제</u>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p>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p>3.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p>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p>3.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p>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p><신설></p>	<p>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u> 2. <u>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u>
<p>제134조(구성)</p> <p>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u>구성한다.</u></p>	<p>제134조(구성)</p>

	<p>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p>	<p>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49조(징계)</p> <p>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u>개제</u>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p>제149조(징계)</p> <p>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u>개제</u>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p>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p> <p>6.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p> <p>2.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p> <p>6.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p> <p>2.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p>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p> <p>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u>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u>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p>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p>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p> <p>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선거시행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u>사람은</u>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p>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p>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p> <p>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p>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p>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p> <p>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p>

<p>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u>총선거</u>에 피선거권이 없다.</p>	<p>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u>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u>에 피선거권이 없다.</p>
<p>제166조(회계 분류)</p> <p>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u>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u>학과·학부</u>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p>제166조(회계 분류)</p> <p>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u>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u>학부·학과</u>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p>상반기 예산안 심의</p> <p>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p> <p>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p>	<p>상반기 예산안 심의</p> <p>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p> <p>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p>
<p>제168조(사전심의)</p> <p>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p> <p>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p> <p>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p>	<p>제168조(사전심의)</p> <p>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p> <p>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p> <p>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p>

<p>제173조(구성)</p> <p>기총예산심의회의는 <u>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u>으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 2. <신설> 3. <신설> 	<p>제173조(구성)</p> <p>기총예산심의회의는 <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총학생회장</u> 2.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u> 3. <u>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u>
<p>제17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총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2. 기총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3.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4. <신설> 	<p>제17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총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2. 기총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3.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4. <u>의장의 소집요구</u>
<p>제179조(지급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u>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u>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u>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제179조(지급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이내</u>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u>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u>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정인홍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2022년 제2차 중운위에서 선거시행세칙의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정 필요사항이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선거기간과 투표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은 투표일로 단어를 통일하도록 함.
- 선거운동본부의 연락처를 후보등록서류에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계 공고와 선거운동본부의 사과문 공고 게시 가능 시각을 08시부터 23시로 통일함.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28조(선거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선거시행공고일 2. 예비후보등록기간 3. 총선거위탁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선거운동기간 6. 투표일 7. 개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u>선거일</u>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제28조(선거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선거시행공고일 2. 예비후보등록기간 3. 총선거위탁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선거운동기간 6. 투표일 7. 개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u>투표일</u>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제37조(후보등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 2.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의 이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4. 후보의 사진 5. 선거공약 	<p>제37조(후보등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 2.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의 이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4. 후보의 사진 5. 선거공약

<p style="text-align: center;">6.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략)</p>	<p style="text-align: center;">6. <u>선거운동본부 연락처</u></p> <p style="text-align: center;">(후략)</p>
<p>제56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2.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u>24시</u> 내에 게시해야 한다. 	<p>제56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2.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u>23시</u> 내에 게시해야 한다.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위원 정인홍, 최준열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기층예산심의회의, 집행조정위원회 진행 및 기준에 대한 몇 가지 불투명했던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더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기존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은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특정 예외 경우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와 기층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게 함. 사후승인, 선집행에 대한 서면의결이 불가능하게 함.
- 기준이 불투명했던 예비비,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 집행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수정함.
- 기타 수정 사항.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11조(집행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최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4. <신설> 5. <신설> 	<p>제11조(집행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최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4.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u> 2. <u>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u> 5. <u>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u>
<p>제14조(예산편성)</p>	<p>제14조(예산편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3.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 당해 회계연도 활동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안 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예산안은 다음 각 호로 나눠 작성하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대비비율을 표시해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항목: 「학생회칙」 166조에 따른 회계 분류 2. 중항목: 각 산하기구 별 예산 3.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4.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5.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3.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 당해 회계연도 활동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안 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예산안은 다음 각 호로 나눠 작성하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대비비율을 표시해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항목: 「학생회칙」 166조에 따른 회계 분류 2. 중항목: 각 산하기구 별 예산 3.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4.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5.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p>제24조(집행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p>제24조(집행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p>2.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u> 2.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p>3.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p> <p>4.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2.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u> 2.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p>3.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p> <p>4.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u>학과·학부</u>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p>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u>학부·학과</u>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p>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2. 기층예산심의회의는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p>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2. 기층예산심의회의는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3.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5.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3.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5.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위원 최준열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감사시행세칙에 존재한 몇 조항 때문에 감사과정이 절차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예결산안 심의 주기에 대한 수정.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22조(회계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3.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u><신설></u> 	<p>제22조(회계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3.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u>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u>

의결기구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위원 김찬수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의결기구운영세칙 조항이 발견되어 의결기구운영세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의결기구의 원칙에 관한 사항
 -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일사부재의 원칙, 투표자유의 원칙 등을 언급함.
 - 필요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의장의 직제를 명문화함.
 - 의결권 부여와 안건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회의진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안건 철회, 심의, 상정, 수정, 회부, 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 의결과정에서의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 회의 명명과 토론 종결에 대한 원칙 준수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규정을 완화함.
 -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의장의 직제를 명문화함.
 - 표결 생략 조건의 허용범위를 늘리고, 투표 내용의 반복의 불가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화상원격회의 진행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신설함.
- 기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함.
 - 맞춤법을 용례에 맞게 시정하고, 일부 공고 기한 등을 변경함.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를 포함한 중요의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5. <신설> 6. <신설> 7. <신설>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를 포함한 중요의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5. <u>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u> 6. <u>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u> 7. <u>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u>
<p>제6조(회의의 명명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p>제6조(회의의 명명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p>2.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으로 한다.</p>	<p>2.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신설></p>	<p>제9조의2(일사부재의) <u>본회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u></p>
<p><신설></p>	<p>제10조의2(투표 자유의 원칙) <u>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는 투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u></p>
<p>제13조(의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신설> 	<p>제13조(의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u>의결권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진행규칙」에 따른다.</u>
<p>제1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신설> 	<p>제1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해당 안건이 제25조에 따라 심의될 때까지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p>제16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p>제16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p>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장소 2. 회의 일시 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p>2.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p> <p>3. 회의의 개최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최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4. <u><신설></u></p>	<p>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장소 2. 회의 일시 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p>2.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p> <p>3. 회의의 개최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칙」 제8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최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4.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u></p>
<p>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p> <p>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2. 유회: 개최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5. <u><신설></u> 6. <u><신설></u> 	<p>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p> <p>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2. 유회: 개최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 중 출석 인원이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5. <u>회기: 개최에서 폐회까지의 기간</u> 6. <u>속회: 휴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u>
<p>제22조(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2.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p>제22조(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2.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p>3.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p> <p>4. <u>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u></p>	<p>3.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u>및 「회의진행규칙」</u>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p> <p>4. <u><삭제></u></p>
<p><u><신설></u></p>	<p><u>제22조의2(안건의 철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u> 2. <u>제1항에서 회의체의 허가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회안을 의결한다.</u> 3. <u>공동 발의 안건의 경우 공동 발의자 과반의 동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u> 4. <u>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u>
<p><u>제25조(안건의 처리과정)</u></p> <p>안건의 <u>처리</u>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p><u>제25조(안건의 심의과정)</u></p> <p>안건의 <u>심의</u>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p><u><신설></u></p>	<p><u>제25조의2(안건 상정)</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생회칙」 및 세칙에 따라 회의체에 안건을 제출한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u> 2.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안건의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u> 2. <u>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한 경우</u> 3.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사조정위원회에서 회의체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u> 2. <u>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된 안건의 특정 시점이 끝난 경우</u>
<p>제26조(토론종결·재심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2.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u>한다.</u> 3.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p>제26조(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2.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u>함을 원칙으로 한다.</u> 3.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p>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4.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p> <p>5.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p> <p>6.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p>	<p>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4.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p> <p>5.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p> <p>6.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p>
<p>제32조(표결방법)</p> <p>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석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p> <p>2. <u>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u>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p> <p>3.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p> <p>4.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p> <p>5. <신설></p>	<p>제32조(표결방법)</p> <p>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석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p> <p>2. <u>의장은 재석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u>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p> <p>3.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p> <p>4.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p> <p>5. <u>구성원은 투표 내용을 반복할 수 없다.</u></p>
<p>제43조(대의원 명단)</p>	<p>제43조(대의원 명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u>이후</u>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u>후</u>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p>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u>이후</u>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p>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u>후</u>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회의진행규칙 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2항,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6조

배경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의 의결기구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라, 의결권 부여와 안건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회의진행규칙」을 신설하고자한다.

목적

-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 본 규칙이 적용되는 범주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의결기구 별 의결권이 부여 범위와 의결의 발효시점을 규정함
 - 안건의 형식, 종류, 분류, 발의, 제출, 반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 서면 의결의 진행 방식과 공고의 방법을 명문화함.

회의진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본 규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및 의사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회의체”, “회의”, “구성원”, “의결”, “의결문”, “의결권”, “발언권”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의결권)

1.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

제7조(안건의 형식)

1. 안건의 형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따른다.
2.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3. 안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안건 발의 일자 또는 안건 제출 일자
2. 안건 작성자
3. 안건 발의 근거 또는 안건 제출 근거
4. 의결 문안
5.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6.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포함된 내용

제8조(안건의 종류)

1. 안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보고안건
2. 심의안건
3. 논의안건
4. 인준안건
5. 긴급안건
6. 특별안건

제9조(안건의 분류)

1. 안건은 발의가 필요한 안건과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으로 분류한다.
2. 발의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 발의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고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은 안건 제출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발의)

1. 안건 발의는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안건 발의자는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안건 제출)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발의자 중 1인
 2.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하기구가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산하기구의 대표자
2. 안건 제출은 안건 제출자가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해당 회의체의 의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안건 반려)

1. 제출된 안건이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안건을 반려할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자와 해당 회의체 구성원에게 안건 반려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서면의결)

1.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2. 서면의결의 표결은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3.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표결 참여자의 소속
 2. 표결 참여자의 직책
 3.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4.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알려야한다.
6.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제14조(공고)

공고란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공고의 방법)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규정된 공고 사항은 ARA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상의 기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안건지 미작성)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4 의결 결과의 안건지 미작성은 제출한 안건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사무처리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이정욱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사무처리세칙은 현재까지 타 세칙에 비해 개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제정된 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타가 남아있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더러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세칙을 다시 활성화하는 시초가 되고자, 사무처리세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사무처리세칙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 조문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을 교정
- 사무처리세칙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 사무처리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 산하기구 전반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처리세칙 제7조 또한 본회 산하기구 전반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보아야 마땅함. 그러므로 구성원 명단 최신화의 의무를 모든 산하기구에서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6조(사무처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u>효율적인</u>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p>제6조(사무처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u>효율적인</u>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p>제7조(사무의 인수·인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2.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3.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4. <u>중앙집행위원장은</u>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u>중앙집행위원 명단을</u>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p>제7조(사무의 인수·인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2.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3.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4. <u>각 산하기구 대표자는</u>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u>구성원 명단을</u>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3월 23일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 정인홍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학내·외 문화행사가 감소하였다.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본회 회원의 대중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을 검토하였고 일부 개정 필요 사항을 발견하였다.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문화자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유동성을 주고,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시기를 세칙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학생회비가 반기별로 납부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회비의 기준이 해당 학기 학생회비 납부액이 되도록 함.
- 학교지원기금을 학생지원팀 외 타 부서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신·구문 대비표

구문	신문
<p>제8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회는 <u>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u>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p>제8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u>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2. <삭제> 3. 문화자치위원회는 매년 <u>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p>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u>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u></p>	<p>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u>후임 문화자치위원이 인준되는 중앙운영위원회까지로 한다.</u></p>
<p>제12조(심의 및 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u>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p>제12조(심의 및 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u>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p>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3.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석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p>	<p>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3.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석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p>
<p>제13조(기금의 구분)</p> <p>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2. 학교지원기금: <u>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u> 지원되는 기금 	<p>제13조(기금의 구분)</p> <p>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2. 학교지원기금: <u>학교로부터</u> 지원되는 기금
<p>제19조(지원금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2. <u>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u>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제19조(지원금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2. <u>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u>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